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신건강 고위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실시 등〉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42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3
------------------	---

1. 정신건강 고위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실시 등	3
--	---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42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직군의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소방·경찰·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

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제10조제1항제2호·제11조 및 제7조제3항제2호의2·제13조제1항제2호의2·제13조제1항제2호의3·제15조제5항 신설).

II. 검토 의견

1. 정신건강 고위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실시 등

□ 개정안은 소방·경찰·군공무원,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무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국가계획 수립 시 그 대상에 소방·경찰·군공무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제15조제7항에----- ----- -----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소방·경찰·군공무원, 교정 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 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 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	2. -----특성

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 8.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
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
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
행한다.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
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
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
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
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
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및 직업별 특성에-----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생애주기,

성별 및 직업별-----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애주기,

성별 및 직업별 -----

-----.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실시) ① -----

-----.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3. 4. (생략) ② ③ (생략)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2. (현행과 같음) 2의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치원 2의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소방·경찰·군공무원,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검진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⑩ -----제8항까지에서----- ----- -----
---	--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항에----- ----- -----.
---	---------------------------------------

□ 안 제15조제5항은 직무의 특성상 정신건강이 위협에 처해질 개연성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무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¹⁾에 근거하여 일반건강검진²⁾ 체계 내에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에 대하여 검진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34세 대상으로는 2년 주기로, 40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
- 건강검진³⁾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1) p. 13. 참고자료1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1 참조

2) 국가건강검진체계는 생애주기별·목표질환별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사 등으로 구분됨.

3)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건강검진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간호사 등 인력 확충과 시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4),

개정안에서 무상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없으며, 주요 전문인력인 정신건강전문요원5)은 정신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및 전문성이 미흡함.

- 특정 직역이 업무 종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거나 직무가 주는 고유한 정신적 충격이 클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직군에 대하여 특수한 직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국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직군별 종사자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될 필요6)가 있고, 특정 직역의 종사자가 정신질환에 더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 제13조7)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4) p. 16. 참고자료2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③ ~ ⑧ (생략)

6) 예컨대 연구 결과 가축방역관이나 도축업 종사자 등 심리적 불안정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직군이 더 발굴될 수 있을 것임.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

하여야 하는 기관·단체·학교·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서도 직역별로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문들을 갖추고 있는 입법례가 다수 있음.

< 직역별 정신건강 지원 주요 입법례 >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사항목·시기·주기, 진료의 대상·방법·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법」

제10조의2(중양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양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양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학교·단체)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3.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리지원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현재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시 중복 우려가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적인 정신건강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사, 간호사) 및 별도의 시설·장비 설치가 마련되어야 함.
국방부	○개정안에서는 ‘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군인, 군무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최근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고,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사·진료비용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대상으로서 특정 직업별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직업에 대한 낙인 효과, 정신과 진료의 기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한의사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비의료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을 진단하거나 감별해 내는데에는 제한이 있고, 비용이 발생하는 의료적 검진은 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건강검진 시 정신건강검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에서 열거한 직업군들은 해당 분야의 개별법이 있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개별법에서 해당 직업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신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임.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을 직접 관리하는 정신건강사업 종사자들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직업군으로 보아야 함.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한의사협회	○사회적 사건이 이슈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한 직업군에 주목하고 해당 직업군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중증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일반인 정신건강 증진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

	○특정 직업군에 대하여만 무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일부 직역군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실시 의무화는 비용 대비 효과적 측면에서 회의적인 측면이 있고,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자료1】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1]
---------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9. 정신건강검사 ○ PHQ-9(우울증) 검사 및 상담	너-701 (FY75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 (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별지 제14호 서식]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PHQ-9)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 을 숙지한 검진 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 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다. -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또는 9번 문항을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가까 운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 고,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전혀 아니다(0점), 여러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점)
○ CAPE-15(조 기정신증) 검 사 및 상담	6,000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세~34세 (2년마 다)	○ [별지 제14호의2 서식]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CAPE-15)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 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필요시 설문내용을 숙지한 검진 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변 을 기입할 수 있다. - 빈도 총점이나 고통 총점이 6점 이상이면 가까운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으로 의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 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점수산정기준: 빈도 - 없음(0점), 가끔(1점), 자주 (2점), 거의항상(3점) 고통 - 없음(0점), 조금(1점), 상당히(2점), 매우 (3점)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PHQ-9) >

☐ 문항

※ 지난 2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곤란을 겪으셨습니까?

	문항	없음	2-6 일	7-12 일	거의 매일
1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0	1	2	3
2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0	1	2	3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 / 혹은 너무 많이 잤다.	0	1	2	3
4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0	1	2	3
5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0	1	2	3
6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0	1	2	3
7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0	1	2	3
8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 할 수가 없었다.	0	1	2	3
9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0	1	2	3
각 칸별로 점수를 더해주세요					
총 점					

☐ 결과

점수	분류	설명 예시
0-4	우울아님	유익한 수준의 우울감이 시사되지 않습니다.
5-9	가벼운 우울	다소 경미한 수준의 우울감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기분상태가 지속될 경우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대처자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까운 지역센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0-19	중간정도의 우울	중간정도 수준의 우울감이 시사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우울감은 흔히 신체적, 심리적 대처자원을 저하시키며 개인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까운 지역센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보다 상세한 평가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7	심한 우울	심한 수준의 우울감이 시사됩니다. 전문기관의 치료적 개입과 평가가 요구됩니다.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CAPE-15)>

☐ 문항

※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자주 해당 사항을 경험하는지 답해주시고, 해당 경험이 있을 경우 얼마나 힘들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빈도				고통			
	없음	가끔	자주	거의 항상	없음	조금	상당 히	매우
1.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넌지시 말하거나, 숨겨진 의미로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2.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3.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4. 당신을 둘러싼 음모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5. 당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6. 컴퓨터와 같은 전자 기기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7. 당신의 머릿속 생각들을 누군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8. 당신의 머릿속 생각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9. 당신의 생각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들을까 봐 걱정된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10. 당신의 생각을 메아리처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11. 어떤 기운이나 힘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12.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똑같이 생긴 분신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13. 혼자 있을 때 어떤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14.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15.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 혹은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0	1	2	3	0	1	2	3
점 수	/45				/45			

☐ 결과

점수	설명 예시
빈도와 고통 6점 미만	특이 소견 없음
빈도 6점 이상 & 고통 6점 미만 빈도 6점 미만 & 고통 6점 이상 빈도와 고통 6점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를 권유함

【참고자료2】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	---------------------------------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마.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 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기 아. 방사선촬영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